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6-13

대 전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6구합10394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redacted]공사
피 고	1. [redacted]시장
	2. [redacted]군수
변 론 종 결	2017. 3. 2.
판 결 선 고	2017. 4. 2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redacted]시장이 2016. 7. 14. 원고에게 한 별지 제1 목록 기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경정거부처분 및 피고 서천군수가 2016. 8. 2. 원고에게 한 별지 제2 목록 기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6-13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redacted]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조, 제3조, 제6조에 따라 자본금 전부를 국가가 출자하여 설립된 공법인이다.

나. [redacted]도지사는 2016. 2. 11. [redacted]시 [redacted]읍, [redacted]면, [redacted]군 [redacted]면 일원(이하 '이 사건 일원')에서 농경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여 11,916,783.1㎡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을 마쳤다며 '임대, 매각, 직접사용 대상 매립지 등 698필지 6,532,510.2㎡'에 대하여는 소유권이 원고(기금관리처)에게 있다는 내용 등의 남포지구 간척농지개발사업(부사공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인가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를 하였다.

다. [redacted]시 [redacted]읍 [redacted]리 [redacted]번지 외 11필지 110,571.9㎡, [redacted]시 [redacted]읍 [redacted]리 [redacted]번지 외 240필지 2,103,541.8㎡(이하 합하여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 [redacted]군 [redacted]리 [redacted] 외 [redacted]필지 4,377,684.8㎡, [redacted]군 [redacted]면 [redacted]리 [redacted]번지 외 21필지 81,880㎡, [redacted]군 [redacted]면 [redacted]리 [redacted]번지 외 10필지 27,075.2㎡(이하 합하여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는 이 사건 일원에서 이 사건 사업에 따라 매립된 토지로서, [redacted]도지사가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한 임대, 매각, 직접사용 대상 매립지 등에 해당한다.

라. 원고는 2016. 4. 14. 피고 [redacted]시장에게, 2016. 5. 12. 피고 [redacted]군수에게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은 원고가 아니라 국가가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에 대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피고 [redacted]시장은 2016. 5. 4., 피고 [redacted]군수는 2016. 5. 13. 원고의 위 요청을 거부하였다. 원고는 2016.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6-13

5. 19. [redacted]도지사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redacted]도지사는 2016. 6. 16. 원고의 청구를 불채택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 [redacted]시장은 2016. 5. 25. 원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제1 부동산 취득에 따라 별지 제1 목록 기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피고 서천군수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부동산 취득에 따라 별지 제2 목록 기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이하 통틀어 '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에 관한 납부서 및 영수증을 교부하였다.

바.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31.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사. 원고는 다시 2016. 7. 13. 피고들에게 이 사건 취득세 등을 감면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redacted]시장은 2016. 7. 14., 피고 서천군수는 2016. 8. 2.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은 국가가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① 지방세법 제9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은 사실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②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을 모두 취득하였다 하더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6-13

도,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은 국가에 귀속을 조건으로 원고가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법 제9조 제1항의 비과세 해당 여부

부동산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두27551 판결,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917 판결 등 참조).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4호는 '농어촌정비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업생산기반을 조성·확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같은 조 제5호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농수산업을 주목적으로 간척, 매립, 개간 등을 하는 농지확대 개발사업'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어촌정비법 제10조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토지 소유자가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중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매립지·간척지·개간지·취토장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이하 '매립지 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6-13

시행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 · 처분한다. 1. 임대, 2. 매각, 3. 직접 사용, 4. 일시 사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매립지등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농어촌정비법 제114조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준공(부분준공을 포함한다)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매립지등에 대하여 지적공부 정리와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와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경우 명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차, 매각, 일시사용 및 직접사용 대상 매립지등 : 한국농어촌공사(기금수탁관리자) 명의로 등기, 2. 제1호이외의 매립지등 : 농림축산식품부를 관리청으로 추가 기재하여 국가 명의로 등기'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법령의 규정 내용을 살펴보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매립지 등은 그 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임대, 매각, 직접사용, 일시 사용의 방법으로 관리·처분하는데, 그 관리·처분을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기금수탁관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매립지 등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것은 원고가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관리·처분권을 취득하였기 때문이어서(가사 원고 주장대로 지방자치단체인 보령시가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의 원시취득자라고 할지라도 원고가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취득하였다는 점은 달라지지 아니한다), 적어도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의 전제사실로서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이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6-13

2)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비과세 해당 여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것은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국가 등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그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26조 제1항과 같은 취지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데에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할 당시에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두697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고시 또는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질 때까지 원고와 국가 사이에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을 국가에 귀속하는 등의 조건을 미리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처분할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이 반드시 국가에 귀속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국가에 귀속을 조건으로 하는 부동산'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6-1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심준보

판사 손호영

판사 박지숙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6-13

제1 목록

1. [redacted] 110,571.9m²
 취득세 : 37,675,270원
 농어촌특별세 : 2,691,080원
 지방교육세 : 2,152,860원

2. [redacted] 2,103,541.8m²
 취득세 : 204,783,420원
 농어촌특별세 : 20,478,340원

제2 목록

1. [redacted] 4,377,684.8m²
 취득세 : 401,693,860원
 농어촌특별세 : 40,169,380원

2. [redacted] 81,880m²
 취득세 : 7,513,250원
 농어촌특별세 : 751,320원

3. [redacted] 27,075.2m²
 취득세 : 8,695,410원
 농어촌특별세 : 621,090원
 지방교육세 : 496,870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6-13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다른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의제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4. "농어촌정비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6-13

가. 농업생산기반을 조성·확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5.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 농수산업을 주목적으로 간척, 매립, 개간 등을 하는 농지확대 개발사업

제10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토지 소유자가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5호라목의 농업 주산단지 조성과 영농시설 확충사업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도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와 처분)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중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매립지·간척지·개간지·취토장(취토장: 쓸 흙을 파내는 곳)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이하 "매립지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처분한다.

1. 임대
2. 매각
3. 직접 사용
4. 일시 사용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6-13

▣ 매립지등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

제4조(매립지등의 소유권 보존등기)

① 사업시행자가 농어촌정비법」 제114조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준공(부분준공을 포함한다)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매립지등에 대하여 지적공부 정리와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와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경우 명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차, 매각, 일시사용 및 직접사용 대상 매립지등 : 한국농어촌공사(기금수탁관리자) 명의로 등기
2. 제1호이외의 매립지등 : 농림축산식품부를 관리청으로 추가 기재하여 국가 명의로 등기